

10.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(2010.12.2.신설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44조의 2에 의거하여 본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및 의결한다. 단, 3항에 대해서는 논의한다.
(2015.4.29. 자구수정),(2021.2.4. 개정)

- ① 해당 연도 적정 등록금 산정에 관한 사항 (2015.4.29 신설)
-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(2015.4.29 신설)
- ③ 기타 등록금 조정에 관한 사항 논의 (2021.2.4. 항 추가)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8인으로 구성하며,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기획관리처장으로 한다. (2011.12.28.자구수정)(2018.04.24 자구수정)(2019.2.8.명칭변경)

②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직원 3인
2. 학 생 3인 (2011.12.28.자구수정)
3. 관련 전문가 2인(2021.2.4. 개정)(2022.2.8. 개정)

③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(定數)의 10분의 3이상,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미만이 되도록 한다. (2021.2.4. 항 추가)

④ 관련 전문가를 선임할 때에는 교직원 대표와 학생 대표가 협의하여야 한다.(2021.2.4. 항 추가)

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.

② 위원장의 유고시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일 7일전에 일시, 장소, 안건 및 회의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해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 (2018.04.24 항 추가)(2022.04.22. 개정)

1.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은 회의 개최 7일(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) 전까지 통지한다.(2022.04.22. 추가)

2. 회의자료는 회의 개최 5일(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) 전까지 송부한다. (2022.04.22. 추가)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(2022.04.22 개정)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(2019.12.18. 개정)

③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, 학생,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 (2022.04.22. 항 추가)

제6조(회의록) ① 위원회 회의록은 기획관리처에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. (2018.04.24 자구수정)(2019.12.18. 개정)

②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(2018.04.24 항 추가), (2021.2.4.개정)

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,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. (2018.04.24 항 추가)

제7조(자료열람) 위원회는 등록금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고, 해당부서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 (2011.12.28 신설)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